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트제갈공명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□ 변경 사유

- (1) S-P클래스 신설
- (2)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분류기준 변경
- (3)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

□ 효력발생일 : 2014. 3. 16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S-P클래스 신설	<u>S-P : AQ291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S-P클래스 신설	<u>S-P : AQ291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<u>2013.04.26: 일괄신고서 효력발생</u> <u>2013.05.10: 투자신탁 최초 설정</u> <u>2014.3.16: S-P클래스 신설</u>
	-	<u>2014.3.16 : 투자대상자산 중 환매 조건부 매수 추가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S-P클래스 신설	<u>S-P클래스(펀드코드 : AQ291)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 중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	<u>트러스트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펀드 : 주식모 50% 미만, 중기채권모 80%이하, 중장기채권모 : 80% 이하</u> <u>재형칭기스칸채권혼합 삭제</u>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	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
	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8) 환매조건부 매수
	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관련 제한	삭 제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	<u>〈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변경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S-P클래스 신설	<u>S-P클래스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 증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S-P클래스 신설	<u>집합투자업자 보수 : 0.54%</u> <u>판매회사 보수 : 0.35%</u> <u>신탁업자 보수 : 0.015%</u> <u>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0.015%</u> <u>기타비용 : 0.040%</u> <u>총보수 비용 : 0.960%</u> <u>합성 총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의 총보수·비용 포함) : 0.960%</u> <u>증권거래비용 : 0.370%</u>
	S-P클래스 신설	<u>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(누적)</u> <u>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/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(모투자신탁의 보수</u>

		<u>포함)</u> <u>1년후 101천원</u> <u>3년후 315천원</u> <u>5년후 546천원</u> <u>10년후1,210천원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-	<u>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</u> <u>및 자투자신탁의 클래스 추가에 따른 보수 및 비용 기재</u>